

[] 인증운영기관
저탄소철강 **지정신청서**
[] 인증시험평가기관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90일
신청기관	① 기관명(법인명)	② 대표자 성명	
	③ 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	
	④ 소재지		
	⑤ 기관 대표전화		
	⑥ 설립 근거		
	⑦ 설립 목적		
	⑧ 설립 연월일		

「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탄소철강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정관 사본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계획서 3. 「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30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. 그 밖에 인증기관 지정 심사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